

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제외 및 우선선발(권장)/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증빙서류

1.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대상자

구분	제출서류	
긴급 경제적 위기가구	학부모 실직 휴·폐업 등 • [실직]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건강보험공단), 국민연금가입자증명(국민연금공단),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(근로복지공단),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등 • [휴·폐업] 휴·폐업사실증명(국세청) ※ 부모 중 1인의 실직 및 휴·폐업 증빙 필요 ※ 장학생 선발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※ 장학생 선발일 이전에 실직, 휴·폐업 사실이 확인되고, 선발일 시점까지 그 현상이 지속되고 있을 경우	
	파산/면책	• 개인파산(또는 면책결정) 선고 통지
	회생	• 개인회생 인가(또는 면책) 결정 통지
	기타	•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,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

2. 우선 선발자(권장) /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

구분	제출서류
장애인	•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
다문화가정 자녀	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(외국인등록증) • (인지·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) 기본증명서
탈북가정 자녀	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국가보훈대상자(본인 및 유가족)	•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보훈청장, 보훈지청장,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(본인, 유가족) 확인서 일체 * 국가보훈기본법, 국가유공자법, 보훈보상자법, 독립유공자법, 5.18유공자법, 특수임무유공자법, 참전유공자법, 제대군인법, 그 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
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	•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• 가족관계증명서
부모 중 한 분이 중증환자인 학생	• 진단서 ※ 보건복지부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의 [별표3] 중증질환자, [별표4] 희귀질환자, [별표4의2] 중증난치질환자, 중증치매자 관련 상병코드가 진단서로 확인되어야 함 • 가족관계증명서
학업·육아 병행자	• 가족관계증명서 ※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)
자립준비청년(舊, 보호종료아동)	•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
청소년쉼터 퇴소 학생	• 쉼터입소기간확인서 ※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,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
가족돌봄청년	•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대상 통지서 ※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(소)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

※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